

의안번호	2212018
의 퇴 인	추경호 의원
회 답 일	2025. 8. 13.
추계번호	25G4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사용지·어업용 토지등·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영농자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등
- 적용 일몰기한 3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의 적용 일몰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8년말로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2026~2029년 4년간 총 10조 6,531억원(연평균 2조 6,633억원)으로 예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안 제69조의2)	-127	-127	-127	-	-382	-127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안 제69조의3)	-21	-21	-21	-	-63	-21
영농자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연장(안 제71조제1항)	-654	-654	-654	-	-1,962	-65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안 제87조의2)	-53	-52	-51	-	-157	-52
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안 제88조의5)	-282	-507	-507	-225	-1,521	-380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안 제89조의3)	-3,192	-5,745	-5,745	-2,553	-17,235	-4,309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안 제105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	-26,933	-28,374	-29,894	-	-85,201	-28,400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12호)	-4	-4	-4	-	-12	-4
합계	-31,266	-35,484	-37,003	-2,778	-106,531	-26,633

주: 각 항목별 세수효과의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연도의 평균이며, 이들 연평균을 합산한 금액은 합계의 연평균과 일치하지 않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개정안) 2028.12.31.
2	안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개정안) 2028.12.31.
3	안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 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 세 감면)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개정안) 2028.12.31.
4	안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개정안) 2028.12.31.
5	안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2026년 5%, 2027년 이후 9% (개정안) 2028.12.31. * 2029년 5%, 2030년 이후 9%
6	안 제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2026년 5%, 2027년 이후 9% (개정안) 2028.12.31. * 2029년 5%, 2030년 이후 9%
7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제5호 및 제6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개정안) 2028.12.31.
8	제106조(부가가치세 의 면제 등) 제1항 제12호	○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개정안) 2028.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2	안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3	안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
4	안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5	안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	—
6	안 제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
7	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제5호 및 제6호	○	—
8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제12호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연장

-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양도일이 포함된 연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모두 발생한다고 가정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 상 최근 감면실적을 활용하여 추계
 - 최근 조세지출 실적이 불규칙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 2020~2024년 감면실적 평균 수준에서 향후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 상 최근 감면실적을 활용하여 추계
 - 최근 조세지출 실적이 불규칙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 2020~2024년 감면실적 평균 수준에서 향후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

나. 영농자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연장

-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3년간 발생할 것으로 가정

- 향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액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증여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654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연장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
- 2024년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여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 저축의 2024년 규모가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후 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
 - 현행 일몰기한은 2025년까지이므로 일몰기한 3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

라.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 연장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
-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 평균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
 - 조합 등 출자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2023~2024년)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 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2026~2029년)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

마.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 연장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
-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 평균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

- 조합 등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2023~2024년)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 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2026~2029년)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

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실적 및 어업용 기자재 실적을 구분하고, 각각의 최근(2019~2023년) 추세를 반영해 향후 조세지출액을 추정
 - 영세율에 따른 조세지출액(징수 기준)은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분이 모두 포함된 자료로, 세부 항목을 각각 구분할 수 없음
 -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공급가액 자료(신고 기준)는 최종 조세지출액을 나타내는 자료는 아니나,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조세지출액에 반영함
- 개정안의 부칙을 참고하여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사.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최근 동 제도의 조세지출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동 감면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 및 부수 토지(이하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제도임
- (감면실적)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최근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동 제도의 최근 연도별 감면 실적은 불규칙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표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 2019~2024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p	'20~'24년 연평균
감면실적	116	135	191	85	114	111	127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2) 추계 방법

-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0~2024년 감면실적 평균(127억원)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연도별로 감면실적이 불규칙하게 증감을 보이고 있으므로, 최근 실적의 평균치를 활용하여 추계

(3) 추계결과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6년 127억원, 2028년 127억원 등 3년간 총 382억원(연평균 12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69조의2)	-127	-127	-127	-382	-127

나.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개요) 동 감면은 어업용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제도임

□ (감면실적)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최근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동 제도는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된 후, 연도별 실적이 불규칙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표 4]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 2017~2024년

(단위: 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p	'20~'24년 연평균
감면실적	신설	19	19	19	17	24	25	20	21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2) 추계 방법

□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0~2024년 감면실적 평균(21억원)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연도별로 감면실적이 불규칙하게 증감을 보이고 있으므로, 최근 실적의 평균치를 활용하여 추계

(3) 추계결과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6년 21억원, 2028년 21억원 등 3년간 총 63억원(연평균 2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69조의3)	-21	-21	-21	-63	-21

다. 영농자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 개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 감면(100%)

[표 2] 영농자녀등의 증여세 감면 요건

구분	내용
증여인 요건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 •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 등에 종사
수증인 요건	•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
감면대상 자산	• 농지: 「농지법」 상 농지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 초지: 「초지법」 상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산림지: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만7천 제곱미터 이내의 것,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이 산림지의 경우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 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 •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따른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상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어선: 「어선법」 상 어선으로 총 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으로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 • 어업용 토지 등: 4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 • 염전: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
누적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적용기간: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실적은 2019년 596억원에서 2023년 654억원으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표 7] 최근 5년간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액
감면실적	596	536	773	712	654	654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2) 추계방법 및 결과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654억원, 2028년 654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총 1,962억원(연평균 6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최근 5년(2019~2023년) 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654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표 8] 향후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액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증여세 감소액	654	654	654	1,962	654

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적용기한 연장

(1) 조세지출 실적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최근 조세지출실적은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37억원, 2023년 43억원 등으로 최근 증가 추세(2021~2024년 연평균 24.2%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일정규모 이하의 농·임·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연간 240만원 한도(만기 3년 또는 5년) 가입 시 약정이율과 저축장려금 지급

[표 9]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¹⁾	연평균 ²⁾
조세감면액	40	35	37	43	67	46
(증감률)	(△24.5)	(△12.5)	(5.7)	(16.2)	(55.8)	(24.2)

주: 1)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

2) 2021~2024년 평균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2024년 규모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여 조세지출액 전망
 - 동 저축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4년 저축 규모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후 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
 - 현재 향후 수신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이자율의 전년대비 증감률에 따라 2024년 이후 조세지출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
 - 국고채 3년물의 이자율은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2024.10.)의 전망치 활용

[표 10] 연간 시장금리 최근 추이 및 향후 전망

(단위: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국고채 3년물	3.6	3.1	2.8	2.8	2.7	2.6
(증감률)	-	(△12.4%)	(△9.3%)	(△2.1%)	(△1.8%)	(△3.3%)

자료: 2023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2024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3) 추계 결과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6년 53억원 등 2026~2028년 3년간 총 157억원(연평균 5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시 세수효과: 2026~2028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안 제87조의2)	-53	-52	-51	-157	-52

마.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 적용기한 연장

(1) 조세지출 실적

-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4

년 709억원 등 2020~2024년 연평균 634억원(9.6%↑) 수준

[표 12]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¹⁾	2년 평균 ²⁾	5년 평균 ³⁾
조세감면액	492	491	611	868	709	789	634
(증감률)	(△37.2)	(△0.2)	(24.4)	(42.1)	(△18.3)		(9.6)

주: 1)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

2) 2023~2024년 평균

3) 2020~2024년 평균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2023~2024년)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

-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 2년 평균(789억원)을 기준으로 함
 -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
-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배당소득세율 14%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
 -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p, 2027~2028년 9%p, 2029년 4%p이며,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
 - 개정안에 따르면 2026~2028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 2029년은 5%, 2030년 이후는 9% 적용

[표 13]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연도별 배당소득세 세율

(단위: %, %p)

	2026	2027	2028	2029	2030
현행(A)	5	9	9	9	9
개정안(B)	0	0	0	5	9
소득세율 변동폭(B-A)	△5	△9	△9	△4	0

- 2023년~2024년 배당소득세율이 14% 수준일 때 평균 조세지출액이 789

억원이므로, 세율 1%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56억원(789억원/14%)으로 볼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
- 따라서 상기 세율 1%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

(3) 추계 결과

-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6년 282억원 등 2026~2029년 4년간 총 1,521억원(연평균 3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4]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시 세수효과: 2026~2029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안 제88조의5)	-282	-507	-507	-225	-1,521	-380

바.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 적용기한 연장

(1) 조세지출 실적

- 조합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1조 1,647억원 등 2020~2024년 연평균 5,725(27.8% ↑) 수준

[표 15]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¹⁾	2년 평균 ²⁾	5년 평균 ³⁾
조세감면액	4,372	3,269	3,113	6,226	11,647	8,937	5,725
(증감률)	(△13.9)	(△25.2)	(△4.8)	(100.0)	(87.1)		(27.8)

주: 1)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

2) 2023~2024년 평균

3) 2020~2024년 평균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

는 최근(2023~2024년)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

-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 2년 평균(8,937억원)을 기준으로 함
 -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
-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이자소득세율 14%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
 -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p, 2027~2028년 9%p, 2029년 4%p이며,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
 - 개정안에 따르면 2026~2028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 2029년은 5%, 2030년 이후는 9% 적용

[표 16]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연도별 이자소득세 세율

(단위: %, %p)

	2026	2027	2028	2029	2030
현행(A)	5	9	9	9	9
개정안(B)	0	0	0	5	9
소득세율 변동폭(B-A)	△5	△9	△9	△4	0

- 2023년~2024년 이자소득세율이 14% 수준일 때 평균 조세지출액이 8,937억원이므로, 세율 1%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683억원 (8,937억원/14%)으로 볼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
- 따라서 상기 세율 1%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

(3) 추계 결과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6년 3,192억원 등 2026~2029년 동안 총 1조 7,235억원(연평균 4,30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7]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 (안 제89조의3)	-3,192	-5,745	-5,745	-2,553	-17,235	-4,309

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1)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동 제도는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 적용대상은 비료¹⁾, 농약²⁾,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농업기계, 양돈케이지·사료저장탱크 등 축산기계, 약제주입기 등 임업용 기자재, 어망·선박용 기관 등 어업용 기자재, 목초액 등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³⁾ 등임

□ 최근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전체 조세지출액은 2019년 1조 8,770억원, 2023년 2조 3,047억원 등으로 집계

- 농·축산·임업용 기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액과 어업용 기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액이 모두 포함된 자료임

[표 18]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액	18,770	17,763	18,481	21,886	23,047

주: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영세율과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에 따른 조세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전체 기자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최근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분의 비율은 2023년의 경우 96.4%, 어업용 기자재

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2) 「농약관리법」에 따르거나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

3)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에 따른 농업기계, 축산기계, 어업용기자재,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임

분의 비율은 3.3% 수준으로 집계

[표 19]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기자재 공급가액 항목별 비율: 2019~2023년
(단위: %)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축산·임업용(제105조제1항제5호)	95.8	95.8	96.0	95.8	96.4
어업용(제105조제1항제6호)	4.2	4.0	4.2	3.6	3.3

주: 공급가액은 신고(귀속) 기준 금액이며, 최종적인 영세율 적용 대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영세율 대상인 기자재 공급가액 자료를 반영하여, 전체 조세지출액을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지출과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지출로 구분함
 - 매년 전체 조세지출액(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에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공급가액 비율 및 어업용 기자재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추정

[표 20] 최근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추정치):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17,976	17,048	17,697	21,092	22,275
어업용 기자재	794	715	784	794	772

(2) 추계 방법

-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28년 2조 9,122억원 등으로 추정
 -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은 2019년 1조 7,976억원에서 2023년 2조 2,275억원으로 2019~2023년 5년간 연평균 5.5% 증가한 것으로 추정

[표 21] 최근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추정치): 2019~2023년

(단위: 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감률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	17,976	17,048	17,697	21,092	22,275	5.5

- 향후 추계기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조세지출액의 증감률 추세(연평균 5.5%)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표 22] 향후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추정: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영세율 연장 시 조세지출액	23,502	24,796	26,162	27,602	29,122

□ (어업용 기자재)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28년 772억원 등으로 추정

- 최근 어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은 2021년 784억원, 2022년 794억원, 2023년 772억원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

[표 23] 최근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추정치):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조세지출액
어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	794	715	784	794	772	772

- 최근(2019~2023년) 조세지출액 증감 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추계기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평균과 동일한 수준(연간 772억원)일 것으로 추정

[표 24] 향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추정: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연장 시 조세지출액	772	772	772	772	772

(3) 추계 결과

-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2조 6,933억원 등 2026~2028년 3년간 총 8조 5,201억원(연평균 2조 8,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026~2028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6조 3,645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2조 1,556억원 감소 예상

[표 25]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2026~2028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105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	-26,933	-28,374	-29,894	-85,201	-28,400
- 국세(74.7%)	-20,119	-21,195	-22,331	-63,645	-21,215
- 지방소비세(25.3%)	-6,814	-7,179	-7,563	-21,556	-7,185

아.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1~2023년 연평균 4억원 수준

[표 26]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 2021~2023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연평균
조세지출액	4	4	4	4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4억원 등 2026~2028년 3년간 총 12억원(연평균 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추계기간 최근의 조세지출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26~2028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9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3억원 감소 예상

[표 27]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2026~2028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106조제1항제12호)	-4	-4	-4	-12	-4
- 국세(74.7%)	-3	-3	-3	-9	-3
- 지방소비세(25.3%)	-1	-1	-1	-3	-1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권아영
세제분석1과	박성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669	nororand@assembly.go.kr
최천규	02-6788-4838	choi1009@assembly.go.kr
박성은	02-6788-4668	ixsepark@assembly.go.kr